# 규정/REGULATION MONTGOMERY COUNTY

관련 항목: BLB, JEA, JEA-RB, JEA-RC, JEE, KLA-RA

책임 맡은 사무실 Chief Financial Officer

Chief Operating Officer

Deputy Superintendent of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

# 유료 학비의 등록

### I. 목적

이 규정은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의 유료 학비 등록과 학비의 면제가 적절한 경우에 등록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책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MCPS 에 등록할 수 있는 실재 거주자와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항목은 Montgomery County Board of Education Policy JEA, *거주*, *학비*, *등록(Residency, Tuition, and Enrollment)*와 MCPS Regulation JEA-RB, *학생 등록(Enrollment of Students)*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 II. 정의

- A. 실제로 거주하는 학생(Bona fide residence) 실제로 또는 진실된 주 거주지가 Montgomery 카운티인 학생이어야 하며 임시적으로나 MCPS 학교에 무료로 등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주하는 학생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주지에서 무기한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학생의 실제 거주지 확인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개별적인확인과 판단으로 이루집니다.
- B. 위기상황(Crisis) 이는 매우 드물고 특수한 상황을 의미하며, 학비면제에 해당하는 서류를 부모/후견인이 모두 제공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는 편리를 위해 또는 MCPS 학교에 무료로 등록하기 위해 임시로 거주하기 위한 경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C. 자격 학생(eligible student) - 시민권자 또는 비시민권자로 성인 나이(18 세)가 된 학생 또는 18 세 이전에 친권으로부터 독립한 미성년자로 현 학사연도의 개학 첫날에 20 세를 넘지 않는 학생입니다.

#### III. 학비 지불 등록의 절차

- A. 학부모/후견인/적격인 학생이 MCPS Regulation JEA-RB, Enrollment of Students 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MCPS 의 학비 지불 등록을 원하는 경우에는 MCPS Form 335-73A Request to Enroll Nonresident, Tuition-paying Student 를 International Admissions and Enrollment (IAE)에 제출해야 합니다.
  - 비거주 학생의 학부모/후견인 또는 해당 학생이 특정 학교를 지정할 수는 있으나 학교 배정의 권리는 MCPS 에 있습니다. 유료 학비 등록이 학교의 선택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 2. IAE 는 MCPS Form 335-73A 를 검토하고 Office of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OSSI)와 등록할 학교의 학교장/대리인과 상담한 후에 다음 요소에 따라 등록을 결정하게 됩니다:
    - a) 학급 사이즈의 한계
    - b) 학년 수준
    - c) 수용 학생 수
    - d) 예상 등록 수
    - e) 학교와 학군 수용력
    - f) 건물 활용
    - g) 교육 프로그램
    - h) 교직원
    - i) 학교장의 의견
- B. Montgomery 카운티의 의탁가정이나 그룹홈에 학생을 배치하고 싶은 타주의 사회복지 기관은 MCPS Form 335-73, Determination of Residency and Tuition Status 와 MCPS Form 335-73A, Request to Enroll Nonresident Tuition-paying

Student 를 IAE 에 제출해야 합니다.

- 1. 타주의 사회복지 기관에 의하여 Montgomery 카운티에 배치된 학생은 IAE 가 다르게 결정하지 않는 한에는 OSSI 와 학생담당관(Pupil Personnel), Office of Student and Family Support and Engagement 의 Attendance Services 와 상담하여 거주하는 의탁가정이나 그룹홈의 거주지에 따른 학교에 배치되게 됩니다.
- 2. 타주의 사회복지 기관은 IAE 에게 학생이 Montgomery 카운티 의탁 가정에 입양을 목적으로 배치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한, 비거주 학생으로의 학비 지불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서류를 제공할 경우, 학비 면제를 받게 됩니다.
- C. 학비는 교육위원회가 매년 책정합니다.
- D. 학비 전액은 채무상환을 포함한 학생당 평균 예상 금액과 같으며 각 학생의 실제 교육비에 최대한 가까운 금액을 반영하여 책정합니다.
- E. 특수교육 또는 추가 특수 서비스를 받는 학생의 경우, 일반 전체 학비에 채부상환을 포함한 예상 추가 서비스 제공 비용이 학비에 추가되어 학비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F. Montgomery 카운티 외에 거주하는 MCPS 직원 자녀의 학사연도와/또는 여름학기 학비 비율은 같은 학년 수준과 같은 서비스를 받는 비거주 학생학비의 반을 지불합니다. MCPS 고용인은 학기 중에 월급에서의 삭감으로 또는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 G. 학비 지불
  - 1. III.H.1. 또는 III.H.3 하의 상황 중 하나를 충족하지 않는 한, 학비 전액을 학생이 등록 또는 퇴교 날짜에 상관없이 학생이 등록한 학기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 2. 학비 비율에 관한 안내는 IAE 또는 Office of the Chief Financial Officer 의 Division of Controller 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 3. MCPS 비 고용인의 학비는 학기별 또는 연간별로 지불합니다. 첫학기의 학비 지불 마감일은 8월 1일이며 제 2학기의 학비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 4. 학비 지불이 마감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불하지 않은 금액에서 매달 1%의 이자가 붙게 됩니다. 학비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학생은 MCPS 학교를 다니지 못하며 지불하지 않은 비용은 모두 미수금 처리 대행 회사(collection agency)로 보내집니다.
- 5. 학기 중에 입학했으나 나중에 학비 지불이 필요한 학생으로 발견된 경우, 학비를 지불해야 만 계속 수업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6. F-1 비자를 소지한 학생은 MCPS Regulation JEA-RC, Enrollment and Placement of International and Foreign Students 에 따라 학교에 등교하기 전에 힉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 H. 학비의 반환과 비례 배분

- 1. 비례 배분된 학비나 반환은 다음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 a) 등록한 기간에의 학비를 미리 지불한 후에 학생이 카운티 거주자이거나 IV.C 에 명시된 면제대상으로 판명 난 경우.
  - b) 학생이 등록할 당시에는 카운티 거주자였으나 나중에 비거주자가 되어 비거주자 학비 지불 학생으로의 등록을 요청한 경우.
  - c) 학생이 타주의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에 의해 MCPS 에 배정되었고 학교 시작 첫날 이후에 등록, 그리고/또는 학기의 마지막 수업일 전에 퇴교한 경우.
- 2. III.H.1 에 명시된 상황에 따른 비례 계산 학비는 연 학비를 학사일로 나누어 일일당 학비를 산출하고 학생이 재학 중이던 일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a) 학비 환불은 공식 퇴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b) 학비 환불은 학생이 재학 중, 결석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3. 학교장/대리인이 비례 계산 형태를 과목당의 등록비 적용으로 승인할 경우에는 학비가 중고등학교의 풀코스 등록비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비례 책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1 과목 -- 연 학비의 25%
- b) 2 과목 -- 연 학비의 50%
- c) 3 과목 -- 연 학비의 75%
- d) 4 과목 -- 연 학비의 100%
- 4. 위의 III.H.1. 또는 III.H.3 에서 명시한 상황 중 하나를 충족하지 않는 한, 학생이 출석 또는 퇴교 날짜에 상관없이 학비는 반환되거나 비례 계산되지 않습니다.

## I. 학비의 수집

MCPS Form 335-73, Determination of Residency and Tuition Status,와 MCPS Form 335-73A, Request to Enroll Nonresident Tuition-paying Student,가 접수되었고 지정된 학비의 청구가 결정되고 배치가 승인된 경우, 교육구 회계 담당 직원은—

- 1. 교육위원회가 적용한 학비율에 따라 적절한 학비를 결정합니다.
- 2. MCPS Form 335-73A, 교육구비거주자의 학비지불 학생 등록 요청서 (Request to Enroll Nonresident, Tuition-paying Student)의 제 3 부의 작성을 확실히 합니다.
- 3. 학부모/후견인/적격 학생에게 학비를 청구합니다.
- 4. 학비를 수집합니다.
- 5. IAE 기록으로 학비의 파이낸셜 어카운트를 정기적으로 조회합니다.
- 6. 학비 지불 마감일부터 30 일 이내에 학비((전액 또는 승인된 플랜 하의 비용)가 지불되지 않을 경우
  - a) 미지불 학비에 이자가 붙기 시작합니다.
  - b) 학비를 연체한 학부모/후견인/적격 학생에게 연체와 연체 이자, 미납 학비를 수금대행회사(collection agency)에 통보함을

그리고/또는 학교에서의 퇴교 가능성을 알립니다.

c) 학교와 IAE 거주 증명 전문가에게 알립니다.

#### IV. 학비 요건의 면제

- A. MCPS Regulation JEA-RB, Enrollment of Students 에 명시된 바와 같이, 18 세 미만의 적격 학생의 부모가 Montgomery 카운티의 실질적 거주자가 아니면서 법정이 지명한 비공식 친척 양육에 해당하지 않는 후견인과 함께 Montgomery 카운티에 거주하는 경우에 교직원은 학비 면제가 적절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IAE 에 상의해야 합니다.
- B. IAE 는 위기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가 명시한, 학비 면제가 필요한 특정 상황에 있는 비거주 학생이 학비 요건 면제를 받을지를 학생 별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IAE 의 결정은 매해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재검토하게 됩니다.
- C. 위기 상황에 따른 비거주자 학비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 1. 사망증명서나 다른 증명서류로 입증되는 부모/후견인의 사망의 경우.
  - 2. 의료 관계자의 소견이나 메모 또는 다른 증명 서류로 부모/후견인의 심각한 질병을 입증한 경우;
  - 3. 치료 제공자가 제공한 서류 또는 다른 증명서류로 부모/후견인의 약물 중독을 입증한 경우:
  - 4. 사법기관, 구치소가 발급한 서류나 다른 증명서류로 부모/후견인의 투옥을 입증한 경우.
  - 5. 군대에서의 명령서나 다른 증명서류로 부모/후견인의 군복무를 입증한 경우, 또는
  - 6. 가정에서의 특수하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학생의 교육적 필요나 안녕에 해로운 영향을 주고 특수하고 참작할만한 상황으로 거주 조정의 필요를 보여주는 경우
- D. 학생이 함께 거주하는 카운티 거주자는 학비 요건 면제를 위해 다음을 신청해야 합니다

- 1. Montgomery County 실재 거주 증명
- 2. 위기상황을 명시하고 학생의 거주 책임을 전환하는 바를 명시한 학부모/후견인이 서명하고 공증받은 편지.
- 3. 위기상황을 뒷받침하는 서류,
- 4. 함께 살 카운티 거주자의 학생에 대한 책임을 수락하는 서명 편지와 이에 대한 공증
- 5. 해당할 경우, 법정 명령에 따른 후견인 서류.
- E. 조건을 충족한 위기 상황에서의 학비 면제에 관한 결정은 서류를 모두 접수한 후 10 업무일 이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황에 특별히 복합적 요소가 있을 경우, 결정 시간이 연장되며 부모님/후견인에게 이를 알립니다.

#### V. 이의제기 절차

Board Policy JEA, *Residency, Tuition, and Enrollment* 에 따라, 실제 거주 또는 학비 면제 결정에 관한 이의제기는 MCPS Regulation KLA-RA, *Responding to Inquiries and Complaints from the Public* 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 A. 개학이 된 후에 학생이 학교 출석을 기다리고 있을 경우, 적절한 상황에서는 IAE가 이의제기 절차의 신속한 결정을 돕게 됩니다.
- B. 학부모/후견인이 학생이 이의제기 절차 기간 동안 학교에 다니기를 희망할 경우, 일년 학비 중 10% 지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첫 결정이 번복되거나 조정될 경우, 학비의 전체 또는 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 변경사*: 1981 년 2월 26일 이전 규정 No 560-1; 1987 년 8월 26일, 규정 수정및 규정을 두 규정으로 분리(본 규정과 JEA-RC);1992년 19월 12일 수정; 2001년 7월 6일 수정;2005년 3월 8일 수정; 2013년 7월 15일 수정; 2019년 4월 3일전 MCPS Regulation JED-RA, 수정, 재색인, MCPS Regulation JEA-RE, *Tuition-based Enrollment*으로 이름 변경.